

I. 총평

1. 한줄평

제13회 행정사실무법의 출제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쉬운 듯 쉽지 않았던”입니다.

2. 행정심판 사례형 문제

행정심판사례의 경우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재결의 확보수단이 무엇인지의 문제인데 기출에서 여러번 반복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된 문제일수록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안됩니다. 대부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부작위의 성립여부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재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는 어렵지 않게 서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해결에서 왜 결론을 이렇게 내었는지 근거를 제시하면 좋은 점수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약술형

행정사법은 제5회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반복출제되어서 어렵지 않게 서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준사례형으로 한문제가 출제되었지만 결국 재판의 취소변경에 관한 문제로서 이문제도 제5회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반복출제된 것입니다. 기출정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상 송달에 관한 문제는 불의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송달에 관한 것도 서술해야 하지만 비송사건절차법상 송달이므로 기일의 통지는 송달에 의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서술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문제가 시험장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로 다가 왔을 듯 합니다.

II. 전년 대비 난이도 변화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난이도는 조금 높았다고 보입니다. 사례문제의 경우 쟁점과 관련된 해결을 잘 서술하면 되었고 약술형은 송달에 관한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III. 내년 대비 시험준비 방향

행정심판이나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사법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이론을 충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되었던 쟁점과 주제를 중심으로 기본부터 착실하게 정리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 중심으로 공부한 후 암기를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제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A공사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甲은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甲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인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와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공사는 甲에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40점)

물음 1) 甲이 A공사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음' 을 다투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가구제 포함)을 설명하시오. (20점)

쟁점적중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실전모의고사 제2회 【문제 1】 【물음 2】

【문제 1】

甲은 중략~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2) 甲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1. 사안의 쟁점

甲이 A공사의 부작위를 다투기 위한 구제수단으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통한 구제와 심판계속 중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이 인정될 것인지 문제된다.

2. 의무이행심판

(1)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2)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1) 의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2)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처분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것, ② 상당기간이 경과했을 것, ③ 행정청에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④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 ⑤ 그 국민에게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사안의 적용

A공사는 관련 법령상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가 있고 甲은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로서 이주대책 수립·실시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의 권리가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가구제

(1) 집행정지

1) 적극적 요건

① 집행정지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② 심판청구의 계속, ③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 ④ 긴급한 필요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2) 소극적 요건

- ① 집행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② 판례는 본안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보고 있다.

3) 사안의 적용

A공사의 부작위는 집행정지의 대상되는 처분이 없다는 점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임시처분

1) 적극적 요건

- ①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것, ②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의 방지, ③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성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2) 소극적 요건

- ① 임시처분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②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사안의 적용

甲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임시지위를 인정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4. 사안해결

- ① 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② 甲은 심판계속 중 집행정지 신청은 인정되지 않지만 임시처분을 통해 가구제가 가능하다.

【문제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A공사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甲은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甲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인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와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공사는 甲에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40점)

물음 2) 甲은 위 물음 1)의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A공사를 상대로 '주택 특별공급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A공사는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甲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하였다. 그러나 A공사는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재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심판법상 수단은 무엇인가? (20점)

쟁점적중 재결의 효력확보 진도별 모의고사 제7주차 **【문제 1】 【물음 2】**

【문제 1】

甲은 용도는 중략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2) 만약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 후에 乙이 甲의 학원등록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甲이 「행정심판법」상 취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설명하시오. (20점)

1. 사안의 쟁점

행정심판위원회의 의무이행명령재결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가 있고 이에 대한 허용여부가 문제된다.

2. 직접처분

(1) 의의

행정청이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1) 적극적 요건

① 처분이행명령재결이 있을 것, ②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것, ③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소극적 요건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3. 간접강제

(1) 의의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인용재결에 의해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①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취소재결 등이나 의무이행명령재결, ② 행정청의 부작위, ③ 청구인의 신청, ④ 위원회의 상당기간 경과에 대한 지연배상 또는 즉시배상명령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4. 사안해결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인정되지 않고 간접강제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문제 2】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신고 및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적중 진도별 모의고사 제1주차 **【문제 2】**

행정사의 자격취득시기와 업무를 수행을 위한 업무신고와 이에 대한 수리거부를 설명하시오.

(20점)

1. 업무신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기준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④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을 신고기준으로 한다.

3. 신고의 수리

(1) 신고확인증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수리간주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법인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4. 수리 거부

(1) 수리 거부

①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지체 없이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이의신청

①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문제 3】

법원은 사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추후 위 과태료 재판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지 가부, 사유, 시기, 취소·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위 과태료 재판을 취소·변경한 경우의 효과와 취소·변경의 제한사유를 설명하시오. (10점)

적중 실전모의고사 제10회 **【문제 3】**

비송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한 후 이를 스스로 취소·변경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1)

1. 재판의 취소·변경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재판은 즉시항고로 불복하는 재판으로 취소·변경이 제한된다.

2. 사유

①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판이 처음부터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부당하게 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판례는 법원이 계속적 법률관계에 대해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고 그것이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3. 시기

- ① 시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② 항고법원의 재판 중에도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4. 취소·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

- ① 원재판을 한 제1심법원에 한한다.
- ② 항고법원은 항고에 의해 원재판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물음 2)

1. 취소·변경의 효과

- ① 재판의 취소는 재판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재판의 변경은 원재판에 대신하는 다른 내용의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재판의 취소·변경에 의해 대상되는 사권관계의 변동이 생기게 된다.
- ③ 취소·변경의 소급효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2. 취소·변경의 제한사유

- ①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②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문제 4】

비송사건절차법상 송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송달의 의의

송달은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통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비송사건절차에서 재판의 고지

(1) 원칙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비송사건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예외

① 기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비송사건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기일의 통지는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고지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공시송달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송달의 방식

「민사소송법」상 송달에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송달함 송달 등이 있다. 비송사건절차에서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된다.

4. 공시송달

비송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이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계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해 송달한다.